

2. 서울特別市永登浦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案(永登浦區廳長提出) (11시 45분)

○委員長 金亨洙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永登浦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文忠實 시민국장입니다.

다음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서울特別市永登浦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 취지로서는 一般廢棄物管理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特別市一般廢棄物管理條例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제정하게 되는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지정토록 하였고 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규정을 정했습니다.

또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대행 계약 내용과 일반폐기물 처리업무 준수지침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으며 특히 4월 1일부터 3개 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췌로 이상으로 말씀드린 조례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구민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亨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專門委員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趙大顯 專門委員 趙大顯입니다.

1994. 4. 7 영등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永登浦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조례 제정 배경과 각구 조례제정실태

본 조례 제정 배경은 서울특별시가 94. 3. 25 일반폐기물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94. 4. 1시행으로 인하여 종전 區에서 부과징수하던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징수권이 상실됨에 따라, 우리구의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키 위해 필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議案이라고 봅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타 區의 현황을 알아본 바 94. 4. 6 현재 22개 區중 12개 區가 이미 조례 제정 확정하였고, 나머지 10개 區도 4. 13일 이내로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조례(안)구성 및 주요골자

영등포구청장의 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은 총 7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었고, 주요내용은 區직영 일반폐기물 수수료 징수 준칙과 현재 서울시의 3개구(중구·성북·송파구)가 시범실시하고 있는 가정 및 사업장 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따라 향후 영등포구의 종량제 실시에 대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내용의 검토 결과

본 조례는 체계상 형식상 기준은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별첨 수정의견 대비표와 같이 몇개의 조문의 내용보완이나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본 위원이 제시한 수정의견과 수정사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기히 배부해드린 수정의견 대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 제4조 (안)에 대하여

원안의 해제 「한」 때를 해제 「할」 때로 수정하고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를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수정이유는 영등포구지역 실정으로 보아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구의회에 통보하는 것보다는 구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권한인 의견제시권을 존중하고 구청장의 신중한 결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구의회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 제5조 제1호 (안)에 대하여

원안의 폐기물 배출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구청장 또는 동장」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수정 이유는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처를 구청장에 한정하지 말고 동장에게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장소의 폭을 넓혀 주민의 신고 편의를 도모하고 제5조 제2호 건축물 폐재류 신고처와

다르게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3) 제8조 제1항 (안)에 대하여

원안의 내용 중 「처리업자」(이하 “폐기물 처리업자”라고 한다)를 「처리 허가 받은 자」로 수정 하였으면 합니다.

수정 이유는 일반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4항과 시 조례 제4조의 표기와 같이 용어통일상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검토결과 처리의견

영등포구청장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조례 준칙(안)에 따라 제정안을 마련한 것이나, 본위원이 제시한 일부 조문의 내용 보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오니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여타사항은 요청안대로 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의견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第4條) 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 제외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u>구의회에</u> 통보 하여야 한다.	 할구의회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구의회 권한인 의견제시권(또는 의견 표명권)기회부여 ○구청장의 신중한 결정도모
(第5條 第1號) 대형생활폐기물 : 배출 3일전에 배출자와 주소, 성명, 물품명 크기 수량등을 <u>구청장</u> 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u>구청장</u> 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놓아야 한다.	구청장또는동장구청장또는동장	○주민신고 편의 도모 ○신고기관의 일원화 (제5조 제2호와 다르게 할 특별한 이유 없다고 봄)
(第8條 第2項) 구청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u>처리업자</u> (이하일반폐기물업자라한다)	처리허가를 받은 자	○일반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4항과 시 조례 제4조의 표기 용어로 표현되어야 적절한 표현이라봄.